수원도시재단 공고 제2026-018호

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

수원도시재단은 수원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간판교체, 점포 내부 인테리어, 이동약자 접근성개선을 지원하는 『**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**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2일

수원도시재단 이사장

Ⅰ 사업개요

☐ **사 업 명**: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

☐ **지원대상(공고일 기준)**

○ 간판교체, 내부 인테리어: 수원시 관내 **창업 3년이상** 소상공인 사업자

(2023. 2. 12. 까지 창업, 사업자등록 기준)

○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: 수원시 관내 소상공인 사업자 전체(창업 기간 제한 없음)

- **소상공인 이란?** (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)
 - **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(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)**
 - **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(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)**
 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 2]에 해당할 것
 -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[별표 1]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

※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거나, 최근 3년간(2023년~2025년) 경기도·수원시에서 동일·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자는 신청할 수 없음

☐ **모집규모**: 100 개소 내외

☐ **신청기간**: 2026. 3. 3.(화) ~ 3. 12.(목) 18:00 [10일간]

☐ **지원분야**: 간판 교체, 점포 내부 인테리어,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 중 1개 분야 선택

☐ **지원금액**: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

☐ **신청방법**

○ (온라인) **경기바로(ggbaro.kr)**를 통해 신청[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]

○ (방 문)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, 상권활성화센터로 방문 접수 가능

Ⅱ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

□ 지원내용

○ 간판교체, 점포 내부인테리어,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 중 **1개 신청분야 선택**

신청분야	지원금액	세부 지원내용
간판교체	최대 300만원 (공급가액의90%)	• 옥외 신규 간판 및 썬팅 교체 지원 ※ 단순 수리(등갈이 등) 지원 불가 ※ 썬팅 단독 교체 지원 불가
점포 내부인테리어	최대 300만원 (공급가액의90%)	• 점포 내부 인테리어(도배, 장판, 가벽, 닥트, 바닥, 천정, 조명 및 전기공사 등) ※ 점포 외부 인테리어 불가 ※ 전기, 전자, 기계, 가구 집기류 등 자산성 품목 신청 불가
*이동약자 접근성개선	최대 300만원 (공급가액의90%)	• 맞춤형 경사로, 자동문 설치 •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신규 설치 •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보조장치 설치 ※ 모든 설치 항목은 렌탈(임대)방식 지원 불가

*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사업은 「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, 사업기간은 6월 15일(월)까지로 한정

※ 1개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, 공급가 90% 지원, 부가세 및 초과금은 자부담

※ 시공(제작)업체는 수원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며, 업체당 시공(제작)참여는 최대 5회

★★ 사업 설명회 운영: 2026. 2. 24.(화) 15:00, 유튜브 수원도시재단TV★★

○ **신청 시 유의사항**

1. 1인 1건만 신청 가능, 온라인 · 오프라인 중복신청은 불가함(신청분야는 선정 후 변경 불가)
2. 신청은 신청업체 대표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,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심사 및 선정에서 제외함
3.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은 불가하며, 해당사실 확인 시 심사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됨
4.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하며,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
 • 지원불가 품목: PC, TV, 냉장고, 에어컨, 가스레인지, 로고라이트, 디지털 사이니지, 소파, 미용의자, 가구류, 테이블, 판매장, 진열대, 판매대 등
5. 2026년 4월 1일 이후 시공(제작)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, 그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
6. 배리어프리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 보조장치, 맞춤형 경사로 · 자동문 등 모든 설치 항목은 구매 · 시공 방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, 렌탈(임대) 방식은 일체 지원 불가함
7. 맞춤형 경사로 설치는 「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제작 · 설치하여야 함

□ 선정 제외(신청 제한)

○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**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**(종업원 수 기준 미충족 등)

○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자 또는 국세 · 지방세 체납자

○ **대기업집단 및 유명 프랜차이즈 직영점 · 가맹점**, [별표 1]에 기업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

○ 사치 · 향락업종(골프장, 무도장, 유흥주점) 및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(투기, 저해 업종 등)

○ 사업자 미등록자, 휴 · 폐업, 무점포 사업자, 1인 중복 신청자

○ 전기 · 전자제품, 기계설비, 가구 집기류 등 **자산성 품목 신청자**

○ 최근 3년간(**2023년~2025년**) **경기도· 수원시에서 동일,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**

Ⅲ 제출서류 및 선정기준

□ 제출서류

○ 온라인 신청자는 파일 첨부, 방문 신청자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

○ 필수서류 미비·누락·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, 해당항목 점수 없음(0점)

○ 기타 증빙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고,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함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항목</th><th>서식번호</th></tr>
<tr><td rowspan="10">필수</td><td>1</td><td colspan="2">체크리스트</td><td>제1호</td></tr>
<tr><td>2</td><td colspan="2">신청서 및 추진계획서(점포사진 첨부 필수)</td><td>제2호</td></tr>
<tr><td>3</td><td colspan="2">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</td><td>제3호</td></tr>
<tr><td>4</td><td colspan="2">청렴이행서약서</td><td>제4호</td></tr>
<tr><td>5</td><td colspan="2">시공(제작)계획서</td><td>제5호</td></tr>
<tr><td>6</td><td colspan="2">견적서(비교견적서 제출 필수)</td><td>제6호</td></tr>
<tr><td>7</td><td colspan="2">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※ 반드시 업체명으로 발급</td><td>-</td></tr>
<tr><td>8</td><td colspan="2">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</td><td rowspan="3">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</td></tr>
<tr><td>9</td><td colspan="2">매출액 증빙서류(택 1)
<table><tr><th>유형</th><th>제출서류</th><th>발급처</th></tr><tr><td>과세사업자</td><td>2024~2025년(최근 2년 전체)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(간이, 일반, 법인)</td><td rowspan="2">세무서, 홈택스, 정부24</td></tr><tr><td>면세사업자</td><td>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10</td><td colspan="2">법인사업자 필수 추가서류
<table><tr><th>유형</th><th>제출서류</th><th>발급처</th></tr><tr><td>종업원 없는 경우</td><td>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</td><td>국민건강보험공단</td></tr><tr><td>종업원 있는 경우</td><td>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</td><td>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</td></tr></table>※ 종업원 수 확인서류 필수 제출(소상공인 사업체 범위 확인용_미제출 시 심사 제외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해당 추가</td><td rowspan="2">11</td><td>간판 시공</td><td>①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② 시공업체 옥외광고업 등록증</td><td>-</td></tr>
<tr><td>전기 공사</td><td>①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① 시공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증</td><td>-</td></tr>
<tr><td>우대 사항</td><td>12</td><td colspan="3">★ 우대조건 확인서류(최대 10점 부여)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내용</th><th>가점</th></tr><tr><td>1</td><td>수원도시재단 주관 소상공인 교육 수료(수원상인대학, 소상공인 교육)</td><td>5점</td></tr><tr><td>2</td><td>수원도시재단 주관 행사 참여자(수원 상권활성화 컨퍼런스)</td><td>5점</td></tr><tr><td>3</td><td>사회적 배려자(국가유공자(유족)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)</td><td>2점</td></tr><tr><td>4</td><td>수원시 착한가격업소, 새빛세일페스타 참여업소,청년(만 39세 이하)</td><td>각 2점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□ 선정기준

정량평가 및 가점 합산(110점 만점)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

○ 동점자 처리 기준

- 청년 여부(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)>전년도 매출액 감소율 평가점수>전년도 매출액 감소율(%)>전년도 연 매출 평가점수 > 전년도 연 매출(원) 순으로 선정자 결정
- 필수서류 및 해당 필수서류 미비, 누락, 미제출 시 심사 제외
- 예비번호 20명을 선정하여 선정취소 발생 시 추가 선정하여 지원 예정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배점</th><th>세부 심사평가 항목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정량평가</td><td>100점</td><td>• 사업기간 업력(사업자등록증 기준) 10점~20점
※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비・누락・미제출 시 심사 제외 또는 점수 없음(0점)
• 전년도 연 매출액 현황(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_수입금액증명원 기준) 36점~40점
※ 매출액 0원 이하, 매출 확인 불가, 미신고, 서류 미비・미제출 시 매출 부문 점수 없음(0점)
• 전년도 매출액 감소율(직전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액 기준) 30점~40점
※ 부가세 과세증명 미제출, 확인 불가 시 매출 감소 추이 부문 점수 없음(0점)
※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1년 미만인 경우, 일 단위를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적용</td></tr>
<tr><td>가점
(최대
10점)</td><td>★ 우대조건 확인서류(최대 10점 부여)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내용</th><th>가점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수원도시재단 주관 소상공인 교육 수료(수원상인대학, 소상공인 교육)</td><td>5점</td></tr>
<tr><td>2</td><td>수원도시재단 주관 행사 참여자 (수원 상권활성화 컨퍼런스)</td><td>5점</td></tr>
<tr><td>3</td><td>사회적 배려자(국가유공자(유족)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)</td><td>2점</td></tr>
<tr><td>4</td><td>수원시 착한가격업소, 새빛세일페스타 참여업소, 청년(만 39세 이하)</td><td>각 2점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Ⅳ 선정자 공고 및 지원절차

□ 선정자 발표: 2026. 3. 20.(금) 17:00 (예정)

○ 통지방법: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개별 문자 통지※ 미기재, 오기재의 경우 통지 불가

○ 통지대상: 선정자 및 미 선정자

□ 선정취소

○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, 1인 중복 신청,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※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
○ 점포개선 과제 수행 허위・부실・불성실하거나 부당한 거래 등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○ 신청내용이 선정 통지 이전에 이미 시행되었거나 타 업체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

○ 법 위반점포, 과제 시행으로 관련 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

○ 신청점포가 시공(제작) 종료 전에 폐업・휴업・사업장 양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

○ 국세・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, 휴・폐업자, 본인 통장 입출금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
○ 최근 3년간(2023~2025년) 경기도 및 수원시 등에서 동일・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
○ 완료보고 미제출, 증빙자료 미제출, 증빙 부실, 기한내 과제 미완료 등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□ 지원절차

구 분	내 용	일 정
사업공고	○ 지원사업 공고 [29일간]	2. 12.(목)~3. 12.(목)
▼		
사업 설명회	○ 온라인 사업 설명회 진행 ※ 유튜브 도시재단 TV	2. 24.(화) 15:00
▼		
접수 및 심사	○ 신청접수 [10일간] ※ 경기바로(ggbar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 ※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	3. 3.(화)~3. 12.(목)
	○ 서류심사	3. 13.(금)~3. 19.(목)
▼		
최종선정	○ 선정 공고 ※ 수원시장허브 게시	3. 20.(금) 17:00
▼		
선정 소상공인 대상 교육 운영	○ 회계실무 및 역량강화교육 ※ 오전/오후 중 1회 선택(필수 참석)	3. 24.(화) (1차) 09:30/(2차) 15:00
▼		
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(소상공인→도시재단)	○ 시공계획 및 견적서에 따라 사업수행 실시 ○ 사업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서 제출 ※ 증빙서류 제출	4. 1.(수)~9. 30.(수) ★이동약자 접근성 개선 : 4. 1.(수)~6. 15.(월)
▼		
지원금 지급 (도시재단→소상공인)	○ 시공현장 모니터링 ○ 증빙서류 미비 시 보완 ○ 미비 자료 없는 경우 지원금 지급	4. 1.(수)~9. 30.(수) ★이동약자 접근성 개선 : 4. 1.(수)~6. 15.(월)

□ 선정 소상공인 시공 추진

○ 시공(제작) 추진기간

- 간판교체, 점포내부인테리어: 2026. 4. 1.(수)~9. 30.(수)
- 이동약자 접근성개선: 2026. 4. 1.(수)~6. 15.(월)

○ 선정 소상공인은 시공 완료 후, 시공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비 전액을 선지급 후, 도시재단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

○ 지원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며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임(현금거래 및 카드결제 불가)

○ 2026년 4월 1일 이후 시공(제작)한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, 그 이전 시공(제작)건은 소급적용 불가

□ 회계실무 및 역량강화 교육

○ 교육일시: (1차) 2026 3. 24.(화) 09:30, (2차) 2026. 3. 24.(화) 15:00

※ 지원대상 선정 후, 1차 또는 2차 교육 일정 중 1회 반드시 선택·참석하여야 하며, 불참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(온라인 신청시 일정 선택 필수)

○ 장소: 수원도시재단 더함사랑방(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1층)

○ 주요내용: 지원금 신청서류 작성 방법,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등

V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

□ 시공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신청

○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, 지출 증빙자료 등을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

○ 완료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와 현장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시공 내용이 지원금 신청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지원금 지급

○ 시공내용 확인 및 검토 완료 후, 신청인 명의의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

□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

<table>
<tr><th colspan="3">항 목</th><th>서식번호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 rowspan="10">필수</td><td>1</td><td>체크리스트</td><td>제7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2</td><td>지원금 지급 신청서</td><td>제8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3</td><td>완료보고서</td><td>제9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4</td><td>전자세금계산서</td><td>–</td><td></td></tr>
<tr><td>5</td><td>계좌이체 입금 확인증 또는 거래내역확인증
※ 입금자 성명/수령자 성명/계좌번호/날짜 확인 가능 서류
※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거래 불가</td><td>–</td><td></td></tr>
<tr><td>6</td><td>시공업체 거래명세서 ※시공(제작)한 업체당 각 1부</td><td>–</td><td></td></tr>
<tr><td>7</td><td>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</td><td>–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8</td><td>신청자 지원금 수령용 본인 통장 사본
※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통장 사본</td><td>–</td><td></td></tr>
<tr><td>하자보증이행각서</td><td>제10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9</td><td>만족도 조사</td><td>제11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해당추가</td><td>10</td><td colspan="3">■ 해당자 추가서류(옥외 간판 시공 등)_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
– 간판 시공: 옥외광고물 신고(허가)필증 또는 비대상확인서(제12호 서식)
– 중요 시공내용 변경 시: 사업 변경승인 신청서(제13호 서식) 와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
<table>
<tr><th>해당 구분</th><th>추가 제출서류</th><th>유의 사항</th></tr>
<tr><td>간판 시공</td><td>옥외광고물 신고(허가)필증_
(관할구청 신고)</td><td>■신청 시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
■신고 대상이 명확히 아닌 경우는 “옥외광고물 신고 비대상확인서” (제12호 서식)제출 가능
단, 간판 시공업체와 신청인의 확인 서명 필요</td></tr>
<tr><td>시공업체 변경 또는 중요한 시공 내용 변경</td><td>① 사업변경 사전승인 신청서 (제13호 서식)_필수
②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(변경)견적서_필수</td><td>■시공업체 변경 또는 중요 시공 분야 변경 시
예) 가벽시공→ 도배장판공사 변경시 변경승인 필요
■시공하기 시작 사전에 변경승인 신청해야 함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Ⅵ 유의사항

■ 시공업체 선정 및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

○ 시공계획서는 최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심사평가 자료로 활용됨

○ **시공(제작)업체는 수원시 관내 소재한 업체로 선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**

○ **시공(제작)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,** 대표자 본인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업체여야 함

○ 시공업체의 업체당 시공참여는 최대 5개 점포까지 가능하며,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업체는 참여불가(초과 시 신청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하여야 함)

○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(제작)내용과 관련된 업태·종목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

○ 간판 시공 및 옥외광고물 제작의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선정하고 , 옥외광고물 표시신고(허가)필증을 제출해야 함 (단, 신고(허가) 비대상인 경우에만 "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비대상확인서"_ 제12호 서식 제출)

※ 주의: 간판 시공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해당 관할 구청에 옥외광고물표시 신고(허가)를 득해야 함

○ 전기공사 시행 시, 시공(제작)업체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
○ 신청업체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), 직계비속(자녀),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외주업체 선정 불가

○ 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만 진행하거나,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(제작)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, 해당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대상이 됨

■ 시공(제작) 비용 지출 시 유의사항

○ **신청자는 소요비용을 선지출한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, 완료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재단은 검토 후 지원금을 신청인(대표자) 명의 계좌로 지급함**

○ 시공(제작)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청업체가 시공업체에 선입금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.

○ 시공(제작)비용 지출 시 현금 대면 거래, 현금 입금, 카드 결제 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

○ 시공비용 지출증빙은 은행 계좌간 입금확인증, 온라인 이체 확인증, 통장 거래 내역으로 가능하며, 입금자·수령자·계좌번호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(입금자는 반드시 신청업체 대표→시공(제작)업체 대표 간 거래 원칙)

○ 시공(제작)비용 및 자부담금은 대표자(또는 법인) 명의 계좌에서 시공업체 대표자(또는 법인) 명의 계좌로 온라인 이체하여야 하며, 가족 관계를 포함한 제3자 거래는 인정하지 않음

○ 자부담금(공급가액 10%), 부가가치세, 지원한도 초과금액, 송금수수료 등은 선정 소상공인 부담

○ 신청업체는 비용 지출 시 시공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여야 함**(수기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)**

■ 지원금 지급신청 시 유의사항

○ 신청인(대표자)은 지원사업을 성실히 시공(제작) 완료 하고, 모든 비용을 전액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

○ 신청인(대표자)과 시공(제작)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법·부당한 행위를

하여서는 아니 됨

○ 지원금은 완료보고서, 현장·결과 사진, 시공 결과물 및 지출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하게 시공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

○ 도시재단은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,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

■ 사업변경, 사업포기 시 유의사항

○ **지원분야(간판교체지원, 점포 내부인테리어,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)는 변경이 불가**하며, 세부 지원내용에 한하여 변경 가능

○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, 시공(제작)업체 변경시 사업 사전변경 승인 요청서【서식 제13호】를 도시재단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

※ 사업변경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권활성화센터 담당자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하며, 사전 승인 없이 변경·추진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

○ 지원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신청서【서식 제14호】를 제출하여야 하며, 차순위 예비 순번자에게 지원 기회가 부여됨

○ 선정 내용 변경 시 지원금 기준

- 제작비용이 상향되는 경우: 지원금 변동 없음
-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: 감소된 비용의 공급가액 90% 기준으로 감액 지원

■ 위법, 부당행위 등 제재조치 유의사항

○ 위법, 허위, 부당한 방법(부가세 대납, 수수료 요구, 허위·부실시공 등)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「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, 「공공재정 환수법」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·환수할 수 있음

○ 위와 같은 위법·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
- 지원금 전액 환수, 향후 5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,
- 위·변조 업무방해 등 해당 시 형사고발 및 유관기관 통보

○ 간판 등 옥외광고물 시공(제작)으로 지원금을 받은 후, 무허가 옥외광고물 설치 등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신청자 및 시공(제작)업체는 향후 5년 이내 사업참여가 제한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

○ 신청기업이 제출한 법 위반 사실 확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지원 취소 및 사업비 반환 조치와 함께 향후 5년간 수원시 전체 지원사업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

<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>

- 자부담금(부가세 포함)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,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, 제3자 부당개입, 선정 소상공인 휴·폐업, 사업장 양도, 부실시공, 관련서류 위·변조, 선정통지일 이전 과제 시행, 당기관 및 타기관 유사 지원사업 과제 중복지원,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

[별표1]

『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』
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

업 종	품목코드	해 당 업 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주류, 담배 중개업
	46109中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	46209中	잎담배 도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6416中	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)
	46463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
	4764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
	47859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11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, 성인용품도소매업
음식점 및 주점업	56211~2	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58122中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	63999中	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 및 보험업,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 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제외
부동산업	68	부동산업,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 (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: 부동산관리업,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)
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	6939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전문서비스업	71531中	기획부동산업*
사업지원 서비스업	75330中	흥신소
	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75999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운영업
	91121	골프장 운영업
	9122中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성인PC방,전화방
	91249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2中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	96992	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	96999中	휴게텔,키스방,대화방

* (운영형태)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(330㎡, 660㎡등)로 분할한 후,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(전화권유 판매)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(시세의 3~5배)에 매도하는 업체

[별표2]

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』 관련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평균매출액 등
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140억원 이하
2. 1차 금속 제조업	C24	
3. 식료품 제조업	C10	120억원 이하
4. 음료 제조업	C11	
5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6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7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8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운수 및 창고업	H	100억원 이하
19. 금융 및 보험업	K	
20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80억원 이하
21. 광업	B	
22. 담배 제조업	C12	
2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5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7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9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C31	
30. 기타 제품 제조업	C33	
31. 건설업	F	
32. 도매 및 소매업	G	6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5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4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	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평균매출액 등
36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30억원 이하
37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15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)	S(S94 제외)	

[비고]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